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나11682 손해배상(지)
원고, 항소인 A (개명 전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이승미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수 담당변호사 나현경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가단55295 판결
변 론 종 결 2026. 6. 19.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5.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의 증거 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에 따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9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고가 웹툰 'F'의 작가 'G'로 활동하며 J 주식회사 또는 H 유한회사로부터 수익을 창출한 사실을 입증하겠다고면서 피고의 계좌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신청들이 제1심 법원에서 대부분 기각된 점, 제1심 법원에서 채택된 IBK기업은행의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에 의하면 원고가 요청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된 점, 9개 금융기관에 피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대출(여신) 등 계좌개설 목록 전체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청하여 신청 범위와 양이 매우 방대한 점, H 유한회사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웹툰 'F'의 작가 'G'와 피고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점, 원고는 이 법원에서 'G' 작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F과 함께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홍보한 결정적인 기록과 증거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도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작가와 직접 접촉한 적이 없어 요청한 자료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회사들로부터 피고가 돈을 지급받았는지를 밝히기 위



해 다수의 피고 금융계좌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조회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회사들로부터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사정이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26. 7. 20.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신영희

판사 정인재